

건설근로자 뽀뽀이가 알려주는 꿀혜택

#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



 건설근로자공제회



건설근로자만의 꿀혜택

#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



에휴,  
이번에도 **1년 미만 계약직**이네...

꿀벌  건설

걱정마세요!

우리처럼 **건설현장을 수시 이동 근무하는**

**건설근로자에게 각 현장 근로내역을 합산하여**

**퇴직공제금을 지급해주는**

**'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'**가 있거든요!





#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도 보장받아야 하니까!

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 
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 
1998년부터 시행됐답니다~!

꿀벌 건설



## • 퇴직공제제도 절차 •

사업주



퇴직공제 가입신고

사업주



근로내역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

근로자



퇴직공제금 신청 및 수령

건설근로자공제회



공제부금 운용 · 증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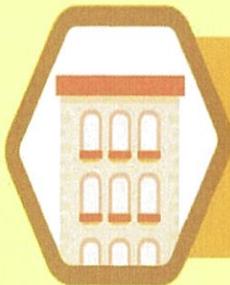


## 퇴직공제가 적용되는 건설공사는 따로 있나요?

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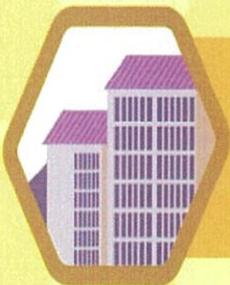
### • 가입대상 건설공사 • (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사업장)



3억 이상 공공건설 · 민간투자공사



100억 이상 민간건설공사



200호(실)이상 공동주택 · 주상복합  
· 오피스텔 공사



# 퇴직공제 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된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 
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일용근로자라면 모두 가능해요!



단, 상용근로자, 1년 이상 기간제, 단시간근로자(일 4시간 미만, 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자)는 제외됩니다!



# 잠깐,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?

퇴직공제 가입 건설사업주는 **다음달 15일까지**  
**매월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공제회로 신고**하고,  
이에 상응하는 **퇴직공제부금(1일 5,000원)**을 **납부**해야 합니다.

다음달



1일  
5,000원



퇴직공제부금은  
퇴직공제금(4,800원/건설근로자 몫) + 부가금(200원/공제회 운영·사업비)으로 산정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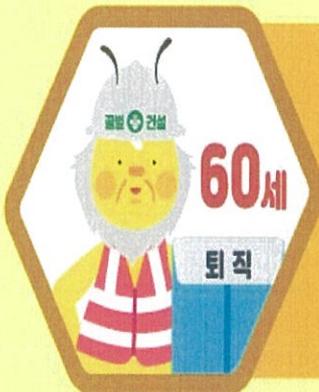


# 퇴직공제금은 언제 신청하나요?

퇴직공제금 신청 및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
## •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•



건설근로자가 **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사망**하거나  
**60세에 이른 경우** 신청  
(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)



**새로운 사업의 시작, 건설업 이외의 업종 취업,**  
**건설업 상용직 취업, 부상(질병), 그 밖에 건설업에 더 이상**  
**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**

단, 2020.5.27.부터 납부월수가 12개월(252일) 미만이라도  
**사망 또는 65세에 도달한 경우에도 지급** 가능합니다.





# 퇴직공제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
퇴직공제금은  
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
## •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및 지급 •



**01**  
퇴직공제금  
지급청구서 및  
퇴직사유 서류  
구비

**02**  
공제회로 제출  
(홈페이지 / 공제회 지사  
또는 센터방문, 우편, 팩스,  
전자우편 / 모바일 앱)

**03**  
지급심사

**04**  
지급(계좌입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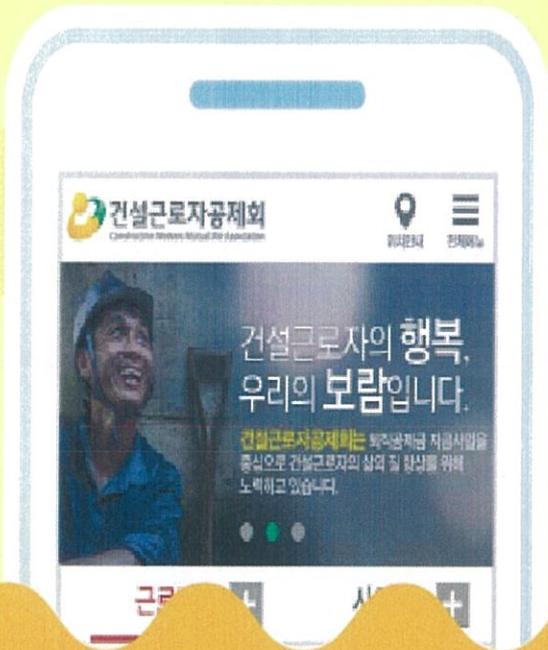
- 지급액 : 퇴직공제금 납부원금+ 이자
-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또는 지킴이통장 개설하여 수령 가능

부정수급자 또는 부정수급을 도와준 자를 신고하는 경우,  
검토 후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.





# 퇴직공제제도의 알찬 혜택을 누리세요!



나의 적립일수 확인

건설근로자공제회

모바일 앱 또는 전화 1666-1133

퇴직공제금, 복지서비스,  
생활안정대부 신청 및  
경력증명서 발급 원스톱 서비스

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접속  
[www.cwma.or.kr/hanaro](http://www.cwma.or.kr/hanaro)



#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!



고객상담센터 1666-1122



건설근로자공제회 [www.cwma.or.kr](http://www.cwma.or.kr)



건설근로자공제회